

문서번호 공익제보2017-0303

수 신 외교부 윤병세 장관 (참조: 외교부 개발협력국 02-2100-8110)

발 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담당 : 유동림 간사 02-723-5302 dryou@pspd.org)

제 목 내부제보자 축출 지시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 발언 관련 경위조사 및 해임요청서

날 짜 2017. 3. 13. (총 2 쪽)

내부제보자 축출 지시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 발언에 대한 경위조사와 해임 요청서

.....

1. 안녕하십니까?

2.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김인식 이사장은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국회와 언론 등에 제보를 하는 직원을 색출하여 축출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김인식 이사장의 발언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김인식 이사장이 내부고발자에 대해 가진 극단적인 인식은 법을 준수해 할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서의 부족한 자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코이카의 감독기관인 귀 부처에 이번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경위 조사와 더불어 이사장 해임을 요청합니다.

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도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에게 부패

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제56조),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이카는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므로,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4. 그런데 김인식 이사장은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숙아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김인식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위법을 강요하였고, 신고내용의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도 협조 하지 말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의 신원을 밝혀내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한 신고자 신분보장을 전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코이카는 현재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해외 원조사업(ODA) 이권개입 의혹 등에 연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는 데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듯이,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도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부패행위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부제보자를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또 한 번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